

대전지방법원 2021. 3. 10 선고 2020가단1386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1. 3. 1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20. 1. 14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소외 B에게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20. 1. 15. 제3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강길연

별지